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 단축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9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 단축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1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Ⅲ. 검토의견

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 단축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 ----- <u>3년마다</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u>5년마다</u>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 <u>3년마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²⁾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사회적기업 활동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해야 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급격한 사회·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수요 및 경제·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봄.

참고로, 사회공헌 목적을 가진 사업조직인 협동조합²⁾의 경우에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생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5. (생략)

있음.³⁾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8,200만원(연평균 1억 1,640만원)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	0	—	—	582	582	116.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고용노동부는 돌봄, 지역소멸 등 시급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적시성 있게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므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9

3)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